

# 서울 행정 법 원

## 제 1 4 부

### 판 결

사 건 2009구합79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2. 김00  
남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조형수  
피 고 연세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변 론 종 결 2009. 10. 29.  
판 결 선 고 2009.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1항 가, 나호 기재 정보 중 2003. 3. 1.부터 2007. 2. 28.까지의 부분, 제2항 나, 다호 기재 정보,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1항 가, 나호 기재 정보 중 2007. 3. 1.부터 2008. 11. 3.까지의 부분 및 다호 기재 정보, 제2항 가, 라호 기재 정보, 제3항 기재 정보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 제5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 : 2008. 11. 3. 아래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1)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적립금 사용현황과 내역, 사용목적, 규칙

(2)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예산 투자내역과 수익률, 사용내역

(3)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이화여대, 삼성과 함께 운영한 YES 펀드의 현황(투자 내역, 투자수익)

(4)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5)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기부금 액수(일반 기부금과 지정기

부금을 구분할 것)

(6)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

나. 피고의 부분공개처분(2008. 11. 18.)

(1) 등록금 인상률(2003년 ~ 2008년)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2) 비공개사유 : 위 가의 (1), (2), (3), (5)항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고, (4), (6)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다. 연세대학교 측은 2008. 10. 13.자 연세춘추(학교 교지)에 별지 기금 운용현황 기재 내용을 게재

- 게재 경위 : 원고 참여연대가 2008. 9. 30. 위 가항 기재 정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한 답변

라. 기타사항

(1) 적립금 개관

(가) 적립금은 대학이 장래의 특정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적립하여 놓는 금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주요 재원 : 기부금, 기타 재원 : 법정전입금, 학생 등록금, 수익사업소득 등

(2) 연세대학교 자금운영위원회 구성, 활동 등

(가) 구성목적 : 자금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구성시기 : 1996.)

(나) 활동·권한 : 매학기 1회 회의. 투자정책지침 제정·개정, 각종 자금 투자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지침 승인, 기타 자금관련 주요사항 심의 조정

마.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대상 변경

이 사건 소송에서 별지 공개청구정보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2항 나, 다호 기재 정보, 제4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YES펀드의 보유자산구성 비율과 보유자산별 평가액 및 총자산평가액(별지 공개청구정보 제2항 나, 다호 기재 정보)은 원고들이 당초 공개를 청구하였던 YES펀드의 현황(투자내역, 투자수익) 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청구를 추가한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당초 2001년부터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기부금 액수를 단지 일반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누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기금별 기금명, 기부목적, 기금총액, 해당 회계연도동안 증가된 금액(별지 공개청구정보 제4항 기재 정보)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청구를 추가한 내용이므로 역시 그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금명, 기금총액 부분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액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세대학교가 매년 일반에 공개하는 결산서에는 일반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총액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분들이 당초에 한 일반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액수 공개 청구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원고들은 당초 공개정보청구일 현재까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이하에서는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1, 2, 3, 5항 기재 정보 중 공개정보청구일인 2008. 11. 3.까지의 부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의 주장(아래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가)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제1정보)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1)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관리업무는 문서서류로 처리하였고,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나 일부 자료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2007년부터는 기금관리 세부내역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보는 피고가 방대한 노력을 기울여 새로 생성해야 한다.

(나) 같은 별지 제2항 가, 라호 기재 정보(이하 제2정보) : 이 사건 소송 중 별지 YES 펀드 현황과 같이 공개하였다.

(다) 같은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제3정보) : 2006년 이전분은 전산화되지 않아 정리되지 않았다.

(라) 같은 별지 제5항 기재 정보(이하 제4정보) :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록금 인상을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는 예산서로 이미 공개되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일반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고,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행정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참조).

정보공개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직접증거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의 방법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를 규정한 것이지,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개대상정보가 개별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 등의

결과물을 검색·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2) 판단

가) 제1정보 중 가, 나호 기재 부분의 2003. 3. 1. ~ 2007. 2. 28. 부분(이하 제1-1정보)

제1-1정보는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정정래의 증언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 이전에는 연세대학교의 적립금관리업무가 전산화되기 전이어서 적립금별로 서류문서로 작성·관리되었고 위 서류들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 서류문서를 일일이 탐색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정보 중 가, 나호 기재 부분의 2007. 3. 1. ~ 2008. 11. 3. 부분(이하 제1-2정보)

피고는 연세대학교가 2007회계연도부터 적립금관리 세부내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세대학교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에 적립금을 이용하여 투자한 금융자산을 정기예금, 채권, 요구불예금, 펀드로 나누어 통계처리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2정보는 그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1정보 중 다호 기재 부분(이하 제1-3정보)

연세대학교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에 적립금을 이용하여 투자한 금융자산을 정기예금, 채권, 요구불예금, 펀드로 나누어 통계처리를 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총투자금액이나, 전체 수익액 및 수익률(손실액 및 손실률)은 위 통계자료를 산술평균하는 것만으로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3정보는 그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립대학회계기준에 따르면 수익률은 환매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만 산출할 수 있는데 금융자산을 중도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각 회계연도 말에 평가손익과 평가금액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손실액이나 수익액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대상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제1정보 중 '수익액 및 수익률(손실액 및 손실률)' 부분은 피고가 보유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이 구하는 공개대상정보는 피고가 보유하는 평가손익과 평가금액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들에게 별지 YES 펀드 현황 기재 내용을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2003. 2. 6. '삼성 아

카데미 YES-SPAS 사모혼합투자신탁 제1호'(이하 YES 펀드)에 가입하였고, 펀드판매사인 삼성증권은 매 분기 첫째 달(1월, 4월, 7월, 10월) 초순경(1일~15일 사이) 위 펀드의 운영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연 3회 정도 연세대학교 측으로부터 월간 운용보고나 수시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YES 펀드 현황 기재 내용은 피고가 회계연도별 운용보고서들 중 특정 시기의 것을 임의로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YES 펀드 현황 기재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제2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증인 정정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금운용회의록은 2008. 10. 이전에는 서류문서로, 그 이후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있고, 현재 위 서류들은 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서류들이 단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정보공개대상 정보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저장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세대학교는 제3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 증인 정정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연세대학교 기획실은 다음 회계연도 계획안 작성시 필요한 등록금 총액을 책정한 후 전년도 대비 등록금 증액분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데, 등록금 증액분의 산정경위와 증액되는 금액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함께 제시하여 온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제4정보로 문서 자체를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2003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의 등록금인상률 산정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4정보는 피고가 주장하는 예산서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2항 나, 다호 기재 정보, 제4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1-1정보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이하 제1-2정보, 제1-3정보, 제2 내지 4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하고, 2008. 11. 18.자 부분공개처분 중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제3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1)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2) 제3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항 단서, 제7호

## 나.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 (1) 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 (2) 판단

피고가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에 관하여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는 당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와 같은 항 단서, 제5호는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입법취지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 제5호의 입법 취지는 내부적 업무과정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경우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삼은 근거와 입법취지, 그 내용과 범위, 요건도 다르다. 또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같은 항 단서, 제5호의 각 처분사유는 상호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를 추가하거나 제3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 부분

피고는 2008. 10. 13.자 연세춘추에 별지 기금 운용현황을 게재함으로써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를 공개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지 기금 운용현황은 연세대학교 기금의 운용목표, 투자원칙, 기금의 개념, 2008. 8. 31. 현재의 기금총액과 투자자산 분포 비율만을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재를 두고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3, 4정보 부분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정한 '영업·경영상의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일응 연세대학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연세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현행 헌법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립학교법 관련법령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국가 교육제도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3정보는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 회계연도의 적립금 집행내역과 투자현황, 자금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이고 제4정보 역시 과거 회계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을 산출한 객관적인 근거에 해당한다.

(다) 적립금 재원의 대부분은 연세대학교가 사업활동이나 경영활동으로 인해 획득한 금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연구·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기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라) 제3, 4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교가 부적정한 적립금 집행으로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교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의 담보로 작용하여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다만, 제3정보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이하 제3-1정보, 제3정보 중 제3-1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제3-2정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되는 경우 연세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연세대학교 자금운영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형성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회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나) 만약 위 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이해당사자나 여론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도 있다.

(다)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3-2정보, 제4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1-1정보, 별지 공개청구정보 제2항 나, 다호 및 제4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제1-2정보, 제1-3정보, 제2정보, 제3-2정보, 제4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_\_\_\_\_

                  판사            이창현 \_\_\_\_\_

                  판사            강문희 \_\_\_\_\_

## 공개청구정보

1. 연세대학교가 2003년부터 2008년경까지(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 단, 2008회계연도의 경우 2008. 11. 3.을 기준으로 하거나, 2008. 11. 3.에 아래의 가. 내지 다.항의 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각 정보가 작성된 2008회계연도의 일자 중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 적립금을 이용하여 투자한 ① 정기예금, ② 채권, ③ 요구불예금, ④ 펀드의 4개 투자자산종류 중에 속하는 개별 금융상품에 있어서

가. 각 금융상품명과 금융상품의 종류(위 4개의 투자자산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및 금융상품별 투자 금액

나. 금융상품별 수익액 및 수익률(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손실액 및 손실률)

다. 4개 투자자산종류 중에 속하는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총투자금액 및 그에 대한 전체 수익액 및 수익률(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손실액 및 손실률)

2. 연세대학교가 2003년부터 이화여대 등과 함께 투자하여 운영되는 YES 펀드와 관련하여 위 펀드 가입일부터 2008. 11. 3.까지 연세대학교가 받은 위 펀드의 각 운용보고서에 기재된

가. 총 투자금액

나. 보유자산구성 및 비율

다. 보유자산별 평가액 및 총자산평가액

라.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액 및 수익률(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손실금액 및 손실률)

3. 2003.부터 2008. 11. 3.까지의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각 회의록

4. 연세대학교가 2003.경부터 2008.경까지(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 단 2008년 회계연도의 경우 2008. 11. 3.을 기준으로 하거나, 2008. 11. 3.에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아래의 정보가 작성된 2008회계연도 일자 중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 2003.부터 2008. 11. 3.까지 연세대학교에 기부된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따라 분류한 기금(2009. 9. 7. 현재 총 688개)과 관련하여 기금별의 기금명, 기부목적, 기금총액 및 해당 회계연도 동안 증가된 금액

5. 연세대학교 총장에 보고된 2003.부터 2008.경까지의 각 해의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 끝.

## 기금 운용현황

자금운용의 명문화된 근거인 투자정책지침서(IPS)의 자금운용목표와 투자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목표

- 단기자금의 운용목표는 대학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본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 장기자금은 신중한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면서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의 지출에 부응하도록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 투자원칙

- 단기자금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단기자금은 대학의 유동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자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 장기자금의 운용과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투자의 원칙이다. 분산투자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운용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특정 투자 자산군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분산투자의 원칙은 투자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현은 자산배분정책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 장기자금은 자금운용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자본손실 위험 등 투자리스크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 서울캠퍼스(의료원 제외)의 2008. 8. 31. 현재 기금총액은 1,869억 원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장학기금, 건축기금, 연구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매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한 것이 아니라, 주로 기부금에 의해 조성되며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 소요를 보완해주므로 등록금 환원을 제고에 기여합니다.

참고로 작년 중앙일보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환원율은 228.5%였고 전국 일반 사립대학 중 1 위입니다. 등록금 환원율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대비 교육수혜의 정도를 재정적으로 대비한 비율입니다. 기금은 투자정책지침서의 운용목표 및 투자원칙에 따라 자금운용위원회 및 자금운용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 8. 31. 현재 기금의 금융자산은 정기예금(CD포함), 채권(AAA등급 이상) 등 안정적인 자산에 약 94%, 펀드에 약 6%로 분산투자되어 있습니다.

### 정기예금(51.11%), 채권(34.19%), 요구불예금(8.74%), 펀드(5.96%)

펀드는 안정적인 AAA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시작하였으며, 운용은 전문성 제고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외부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나, 우리 대학교는 자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전한 채권 위주로 투자하였던 결과 2008. 9. 30. 현재 원금대비 투자손실은 없습니다. 끝.

## YES 펀드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누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현금기준	699.02	699.02	650.87	825.14	1,068.58	777.11	396.11
평가금액	695.90	695.90	667.90	932.16	1,068.58	779.58	398.13
평가손익	25.42	-3.12	17.03	7.02	0.00	2.47	2.02

끝.